

## NEWSLETTER 960

Mar 14, 2024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WCO, ‘HS 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HS 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사유

#### 1. 개정 사유

WCO 제70차, 제71차 및 제7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II. 주요 개정내용

####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

- 허브기침 태블릿(제1704호), 테이프 조명(제8539호) 등 12개 품목

####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 재가수된 대구필레(제1704호), 장식용의 세락믹 얇은 단판의 벽돌(제6907호),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제8471호) 등 23개 품목

#### 3.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

-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제7007.19호),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제9102호) 등 21개 품목

### III.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04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규제대상 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붙임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붙임3] HS품목분류의견서 일부 개정문(신규)
- [붙임4]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국문)

## | Contact



김찬란 관세사 | Director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 Manager

T 02-6929-3474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